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곽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7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및 불복수단 · 제기 기간 안내 의무 명시	3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이 결정·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제7항 및 제56조 제5항·제6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및 불복수단·제기기간 안내 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그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때 그에 대한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57조제6항·제7항,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심사청구) ① ~ ⑤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5조(심사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56조(재심사청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6조(재심사청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u>

<신 설>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①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2. 6.>
-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이루어지고 처리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심사청구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제가(접수)	1,566	1,673	1,943	2,054	2,132
처리(결정)	1,549	1,653	1,799	2,121	2,067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근 5년간 재심사청구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 청구건수	152	205	344	402	356
당해 처리안건수	63	56	70	85	136

※ 출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대해서 현행법²⁾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의 통지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음.

□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³⁾는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재심사청구)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청구인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⁴⁾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각 개별법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령⁵⁾에 따라서도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결정서 또는 재심사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이때 해당 결정서 및 재결서에는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심사청구 결정서 및 재심사청구 재결서 중 >

■ 심사결정서 전단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정서 후단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심사청구와 별도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서류 ◆ 재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심사결정서 ◆ 증빙자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청구인 등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서 및 신분증 등 관련서류 첨부 ② 제출방법 - 온라인: - 우편: ③ 재심사청구 문의는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 담당 부서(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재결서 전단
<안내말씀> 귀하께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각 지방법원)에 위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거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심사청구 방식 등) ③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했

■ 재심사 재결서 후단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에 의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정 시 지체 없이 결과를 통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에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중이며, 심사결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③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및 재심사결정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 중인 사항을 법률로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①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36조제6항) 개정 규정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 때마다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 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인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

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입법례⁶⁾와 같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공인노무사회

-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찬성함. 현행법은 통지의무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시행령 수준에 두고 있어 구체적인 결정·재결사유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제소기간의 기산과 불가쟁력에 직결되는 본질적 사항이 서식 실무에 의존하고 있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은 법률유보원칙과 재판청구권 보장에 부합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행정심판법」 제58조와 정합하며, 현행 제56조의 입법적 흠결을 치유하는 정비 입법으로서 타당함.
- 다만 개정안의 안내사항은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이라는 절차적 정보에 그쳐 실체적 권리구제에는 이르지 못함. 고령의 수급자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장기요양기관에게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의 안내가 실질적 권리구제의 전제가 됨. 심사·재심사청구의 대리인 「공인노무사법」 상 이미 공인노무사의 법정 직무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안내를 법률에 명시한 입법례도 있음.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따라서 결정·재결 통지의무(안 제55조제6항 및 제56조제5항)에는 원안대로 찬성하고, 안내사항(안 제55조제7항 및 제56조제6항)에 “대리인(「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수 정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3